예 천 군

군 보

제1745호 2026. 11. 9.(월)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조 례

○예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758호)

규 칙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76호)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1월 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58호

예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예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기획예산실장, 인구감소대응업무 관련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

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예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천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관광·스포츠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

제11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관내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려는 자에게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제3조～제9조)

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제10조)

라.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제11조)

○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 또는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 비용 일부 지원

마.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범위와 절차(제12조)

○ 지역 활력도모,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노후・유휴시설의 활용에 관한 사항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1월 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76호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채권관리”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121조 앞의 “제8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21조 및 제122조를 각각 제126조 및 제127조로 하고, 제115조부터 제120조까지를 각각 제120조부터 제125조까지로 하며, 제115조부터 제1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위원회의 설치) 예천군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지방공기업 경영,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맑은물사업소 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1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9조(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① 감사인의 선임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제안서를 모집한다.

② 제안서 평가는 제안 요청 내용 이해도, 공공기관 감사 실적, 참여 인력 구성, 수행계획, 감사보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등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군수는 위원회가 선정·추천한 선임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최종 선임하며, 지방공기업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제1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채권관리

제1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보 칙

제127조(종전의 제12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입력한 후 전산 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 출력자료 및 자료가 입력된 전산 보조 기억 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신설 2026. 00. 00.>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19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A	B	C	D	E	
정량평가 (40)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5	15년 이상 (5)	10년 이상 (4)	5년 이상 (3)	3년 이상 (2)	3년 미만 (1)	
	② 징계현황 -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법인기준)	5	0건 이하 (5)	3건 미만 (4)	6건 미만 (3)	10건 미만 (2)	10건 이상 (1)	
	③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제출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공인회계사 제외)	10	20명 이상 (10)	15명 이상 (8)	10명 이상 (6)	5명 이상 (4)	5명 미만 (2)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20	10건 이상 (20)	8건 이상 (18)	6건 이상 (16)	4건 이상 (14)	4건 미만 (12)	
정성평가 (60)	⑤ 소요예산 및 제안금액 평가 - 예산적정성 상대평가 - 감사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대비 가격 합리성	10	매우 적절 (10)	적절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⑥ 감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감사 수행인력 구성원 수,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에 전문성 등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⑦ 감사전략의 적합성 - 공공기관 특성 이해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숙달 정도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⑧ 사후서비스 제공 - 회계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및 재무적 위험요소 개선 권고 등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합 계		100						

2. 평가 방법

가. 정량평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단, 최저·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부 회계감사인 선임 과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115조～제118조)

○ 위원장 : 부군수, 간사 : 맑은물사업소 관리팀장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 및 평가 기준(제119조, 별표 2)

○ 감사인의 선임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제안서를 모집